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칙

## 제1장 총칙

- 1조(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 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하여 창조적 비판 능력을 개발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며 나아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함양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3조(회원 자격) 본회의 구성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1항 본회의 회원은 사회학과에 입학과 동시에 회원이 된다.
- 2항 휴학 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에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준회원은 본 회에 참가하고 토론할 권리는 지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항 2항 또는 4항으로 인해 준회원이 된 경우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 4항 타 학과생이 사회학과로 복수전공을 할 경우 준회원으로 하며, 3항을 만족할 경우 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5항 준회원(휴학생, 복수전공)은 3항을 만족하면 정회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시점부터 학생회장단 선거공고 시점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권을 얻을 수 없다.)
- 6항 본회의 회원은 졸업 이후 자동으로 준회원이 되며 준회원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단 졸업으로 준회원의 자격을 얻은 경우 4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항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탄핵권, 의사 개진권 등을 가진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집행부 부서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3항 본회의 회원은 공식적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생회는 사업 진행에 있어 회비 미납자를 우선순위에서 제할 수 있다.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이에 의한 제반 활동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조(회의구성) 본회는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학생회장단,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두며 산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6조(처벌) 4조 4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총회의 결정에 따라 피선거권과 자치 활동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학생총회

7조(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8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 집행부장의 기재 순위에 따라 대행한다. 이 과정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9조(업무 및 권한)

- 1항 사업계획 심의와 의결권
- 2항 예산, 결산 심의 의결권
- 3항 학생회장단 탄핵 및 의결권
- 4항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 5항 기타 본회의 목적에 의거한 심의 의결권

10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둔다.

- 1항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개최하며 상반기 총회는 학생회장단 취임식, 연간 계획 수립, 예산편성, 집행부 구성 및 기타 주요 현안의 심의 의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하반기 총회는 결산보고, 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단 정기총회는 총회 개시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항 임시총회는 학생회 전체와 관계있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회장이 발의하였거나 정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한다. (단 임시총회는 발의 즉시 공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회의 진행 및 의결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11조(의결)

1항 전체총회는 정회원의 1/4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족수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족수 1/7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일반정족수) 9조 1, 2항은 재적인원 1/4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9조 3, 4항은 10장과 11장의 각 항에 따른다.

3항 9조 5항은 사항의 경중에 따라 일반정족수 적용을 하며 부득이한 경우 9조의 전항에 걸쳐 관례에 따른다.

12조(표결 방식)

1항 표결 방식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인사임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 유동적으로 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 제3장 학생회장단

#### 13조(지위)

- 1항 사회학과의 학생회장단은 정·부 학생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2항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활동 및 회의를 주재한다.
- 3항 정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 집행부장의 기재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4조(임기 및 선출)

- 1항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25일부터 익년 12월 24일까지로 하고 단임 한다. 또한 경희대학교 내 다른 직위 중 처장 혹은 타 부서 정, 부후보를 겸임할 수 없다.
- 2항 학생회장단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 3항 학생회장단 선출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 4항 입후보한 후보가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을 만족하여야 당선으로 인정된다.
- 5항 투표인의 재적과반수 이상을 넘지 않았을 시 1일 연장실시하고 선거 부결 시 익년 학기 초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 6항 학생회장단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익년 재투표와 총회 때까지 현 학생회장단이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7항 6항이 성립될 경우, 다음 학기 개강총회에서 학생회장의 재투표를 실시하며 해당 재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해당 연도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권한과 직무 및 임기는 회칙에 따른다.
- 8항 익년 총회 때까지도 학생회장단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성원 중 1인이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한 학기 동안 학생회장단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

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을 갖는다.

#### 15조(의무)

- 1항 학생회장단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항 학생회장단은 이 회의 대표자로서 총회, 사회학과 운영위원회에 이 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3항 학생회장단은 이 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항 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항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의 선출과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학생회장단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6항 학생회장단 또는 학생회장단이었던 자가 이 회의 대표로 학교 기구의 위원이 될 때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사회학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16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 1항 학생회장단은 총회, 운영위원회 등 이 회의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 2항 회칙에 기재된 안건의 발의와 권한을 행사한다.
- 3항 이 회의 대표로서 일상적 결정을 실시한다.

#### 17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 1항 학생회장단은 이 회의 집행을 총괄한다.
- 2항 학생회장단은 집행부의 구성권을 가진다.
- 3항 학생회장단은 집행부 산하 부서의 부장과 부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 4항 학생회장단은 집행부의 산하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 5항 학생회장단은 집행부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6항 학생회장단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8조(대외적 권한)

- 1항 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생사회 전반에 의사를 개진하고 이 회 또는 당해 학생회의 성명권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2항 학생회장단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고 이 회 또는 당해 학생회의 성명권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3항 학생회장단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4항 이 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체 가입,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활동, 일상적이지 않은 이 회 차원의 성명은 회칙에 따라 해당 사항에 맞는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항 대외적성명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2/3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4장 운영위원회

1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운영 기구이다.

20조(구성) 학생회장단, 각 학년 대표, 각 동아리 대표로 구성한다.

- 1항 각 학년 대표는 매년 봄 학기 개강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2항 4학년 대표에 한하여 학생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3항 총회에서 학년 대표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목할 수 있다.
- 4항 각 학년 대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5항 학년 대표의 가을 학기 휴학 시 가을 학기 총회에서 재선 출하도록 한다.

21조(업무 및 권한)

- 1항 회칙 개정 발의 및 총회 소집 요구권
- 2항 학생회장단 탄핵 발의권
- 3항 집행부 구성과 인준 및 감사권
- 4항 학생회비 및 예산, 결산 심의권
- 5항 집행부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 심의권
- 6항 집행부 각 부장의 출석, 면책 요구 의결권
- 7항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 요구권
- 8항 추가경정예산 의결권
- 9항 사회학과 동아리 심의 및 인준, 예산심의권
- 10항 특별기구 설치 발의 및 의결권
- 11항 전체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심의 및 의결권
- 12항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 및 의결
- 13항 선거관리위원의 구성권
- 14항 당해연도 선거일정에 대해 검토 후 총회에 보고
- 15항 학과 내에서 각종 범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우들의 신고를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로 행동한다.

16항 학생회장단의 대외적 성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22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와 임시운영위로 둔다.

- 1항 정기운영위는 매월 1회 실시한다.
- 2항 임시운영위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 운영한다.

23조(의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특별위원회

24조(지위)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특별운영기구이다.

25조(구성) 특별위원회는 각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 1항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 2항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3항 특별위원회는 설립 시 최초 1회, 구성원과 활동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준 받는다.
- 4항 특별위원회는 단체 구성 자격을 갖춘 뒤 상설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다.

26조(상설 자격)

- 1항 최소 인원은 5명이며 정기적인 모임(한 학기당 4회 이상)을 가져야 한다.
- 2항 특별위원회 등록 후 2학기 이상의 활동 내역 및 실적을 학생회장단에게 등록 및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2/3 이상의 승인을 받으면 총회에 상설특별위원회 승격 인준을 상정할 수 있다.
- 3항 상설특별위원회 인준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한 학기 동안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27조(재정)

- 1항 각 상설특별위원회는 일정 금액의 교비와 학생회비의 지원을 받는다.
- 2항 각 상설특별위원회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다.
- 3항 위원회의 전체 지원금은 집행부에서 학기 단위로 편성 후 각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4항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구성원, 정기모임 요일, 단체의 활동 분야)가 적힌 양식을 제공받아 한 학기 4회 이상의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지원금 배정이 가능하다.

5항 특별위원회지원금의 감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6항 특별위원회는 매 학기 초 이전 학기의 결산을 보고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삭감 혹은 해당 학기의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8조(권리와 의무)

- 1항 각 상설특별운영위원회 장은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 2항 각 위원회의 활동의 자율성을 학생회장단이 보장한다.

29조(상설특별위원회) 각 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 및 내용이다.

제1절 반성폭력위원회

30조 (지위)

반성폭력위원회(이하 반성위)는 과 내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을 사회적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별위원회이다.

31조 (구성)

- 1항. 반성위는 반성위원장과 반성위원으로 구성한다.
- 2항. 반성위의 자세한 구성과 운영은 반성위의 회칙에 따른다.

32조 (자격 및 권한)

- 1항. 반성위는 활동의 특수성에 따라 제약 없이 비공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운영위에서 비공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반성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운영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비공개의 의무를 지닌다.
- 2항. 반성위는 총여학생회 등 학내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자치기구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3항. 반성위는 과 내 정규 단체 행사의 경우(새내기배움터, 총

MT, 농활 등) 반성폭력교육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회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반성위에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부가 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다.

## 제6장 집행부

33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34조(구성) 집행부는 집행부장, 각 부장, 부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회장이 총괄하며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35조(업무 및 권한)

1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항 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에 제출, 심의 받는다.

3항 집행부장은 집행부 전체의 실무와 책임을 총괄한다.

4항 집행 또는 예산 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 ① 기획부 : 학생회 활동 전반의 년, 월간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담당한다.
- ② 홍보부 : 학생회 내부사업의 각종 홍보를 담당하며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각종 홍보와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 ③ 편집부 : 학생회지, 소식지 발간 등의 기타 학생회의 편집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생회 전반활동의 서기를 겸한다.
- ④ 재정부 : 학생회의 재정 전반을 관리·집행하고 결산을 보고한다.

36조(부서의 가감변동) 집행부의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가감 또는 변동할 수 있다.

## 제7장 동아리

### 37조(자격)

- 1항 동아리의 최소 인원은 8명이며 정기적인 모임(한 학기당 8회 이상)을 가져야한다.
- 2항 최근 한 학기간의 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증명하는 활동내용서가 있어야 한다.

### 38조(동아리 재인준)

- 1항 동아리 재인준은 학생총회를 통해서 실시한다. 한 학기 동안 총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시한다.
- 2항 재인준의 기준은 37조의 자격에 의거한다.
- 3항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동아리 자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아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4항 동아리 재인준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모임으로 강등된다.

### 39조(소모임)

- 1항 소모임의 최소 인원은 5명이며 학생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 2항 소모임의 경우 활동 내용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단,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소모임의 경우 활동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 3항 8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에 한하여 소모임 등록 후 2학기 이상의 활동 내역 및 실적(단체명, 구성원, 정기 모임 활동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2/3 이상의 승인을 받으면 총회에 동아리 승격 인준을 상정할 수 있다.
- 4항 동아리 인준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한 학기 동안 총회가 성사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받을 수 있다.

### 40조(권리와 의무)

- 1항 동아리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된다.
- 2항 동아리의 장들은 동아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 41조(동아리 . 소모임 지원비)

- 1항 각 동아리와 소모임의 재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일정 금액의 교비 지원을 받는다.
- 2항 동아리와 소모임의 전체 지원금은 집행부에서 학기 단위로 편성한다. (동아리와 소모임의 지원 금액 비율을 2: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항 운영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서 편성한 전체 지원금을 할당한다.
- 4항 소모임이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구성원, 정기모임 요일, 단체의 활동 분야)가 적힌 양식을 제공받아 한 학기-8회 이상 혹은 4개월-8회 이상의 활동실적을 보고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야 지원금 배정이 가능하다.
- 5항 동아리지원금의 감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6항 동아리 및 소모임은 매 학기 초 이전 학기의 결산을 보고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삭감 혹은 해당 학기의 지원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제8장 재정

4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본회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학생회비는 신입생 입학 시에 일괄 수납할 수 있다.

43조(회계연도)

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2월 25일부터 익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2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마다 예·결산을 행한다.

44조(예산)

1항 예산의 운영계획은 집행부가 학생회 기구별 및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할 것을 총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2항 예산은 학생회장 관할 하에 각 부서별로 집행한다.

3항 예산 집행 시 일체 경비에 대하여 각 부서는 기록의 의무를 가진다.

45조(지출) 승인된 예산은 본회의 해당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 학생회장의 동의에 의해 지출한다.

46조(결산) 집행부는 결산 보고서를 매 학기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선거

47조(선거시기)

1항 학생회장단 선출은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단 피치 못할 사정 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8조(선거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 기권여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및 부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전자투표, 모바일 투표 등의 특수한 투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특수한 방식의 투표 시행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9조(선거관리위원회)

1항 (구성)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단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거관리위원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1주일 전까지 각 후보자의 등록을 받아 자격을 심사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선출, 진행과정을 주관하고 선출 후 즉각 확정, 공고한 후 해산한다.

4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소개서, 추천서와 선거투표용지에 관하여 익년 상반기 총회 시까지 보관할 의무를 가진다.

50조(선거권) 본회 모든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단 4조 4항을 불이행 시, 선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1조(피선거권)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사회학과 제1전공자여야 한다. 전체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요하며 추천인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10장 회칙 개정

52조(발의) 회칙 개정은 아래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발의할 수 있다.

1항 본회 재적인원 1/5 이상의 발의

2항 운영위원회 3/4 이상의 발의

3항 학생회장의 발의

53조(의결 및 공고) 발의 시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재적인원 1/3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를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제11장 탄핵

54조(발의 및 의결)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직무유기를 했을 경우 재적인원 1/3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될 수 있다.

1항 총회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탄핵이 발의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회장단과 발의자들은 총회에서 탄핵발의 사유와 전후 사정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2항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발의할 경우 재적인원 1/5 이상의 서명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발의하며, 운영위원회는 탄핵발의안을 접수하고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3항 학생회장단의 탄핵은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4항 탄핵 투표는 투표일 7일 전에 공지하고 학생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성원의 감독 하에 이틀 동안 진행되며 연장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5항 탄핵이 부결될 경우 재투표를 비롯한 탄핵의 재발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6항 탄핵이 정식으로 발의되었을 경우 해당 학생회장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모든 지위와 권한이 정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집행부장과 운영위원회의 성원 중 총회에서 인준받은 자가 대행한다.

7항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탄핵안을 발의할 때에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55조(공고) 투표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학생회장단의 탄핵이 가결될 경우 잔여임기의 직무와 권한은 집행부장과 운영위원회 성원 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가 대행한다.

## 제12장 비상대책위원회

56조(소집 및 구성)

1항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24시간 후 구성된다.

1. 사회학과 학생회장단 2인 모두가 사퇴 또는 결위되었을 경우
2. 사회학과 학생회장단이 탄핵되었을 경우
3. 사회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결위인 경우 (선거 무산 직후 사회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호선한다.)
4. 기타 사유로 기존 사회학과 학생회 집행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2항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집행국장, 비상 대책 위원으로 구성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집행국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집행국장이 임명되었을 경우, 집행국장은 부학생회장 권한대행에 준하는 업무를 맡는다.)

3항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비상대책위원이 된다. 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내 논의를 통해 추가로 비상대책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전기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부득이한 경우 전전기)

4항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학과 운영위원회 성원 중 1인으로 호선한다.

5항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구를 둘 수 있다. 기구의 구성원은 사회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들은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한다. 단, 산하 기구의 구성원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의결권은 없다.

6항 제1항의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57조(위원장)

- 1항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2항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 및 회의를 주재한다.

#### 58조(권한·업무)

- 1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학과 학생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2항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 집행부의 결위 기간 동안 학생회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최대한 담당한다. 단, 사업을 집행할 의무나 책임은 갖지 않는다.
- 3항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고 사회학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일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학과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4항 기존 학생회의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해산하며, 기존 집행부의 업무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학생총회가 성사된 경우에는 학생총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59조(해산)

- 1항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궐선거를 통해 과학생회장단을 선출한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3일 이내 해산한다.
- 2항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산과 관련한 자료는 해산 이전에 사회학과 SNS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산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단, 학생총회가 성사되어 결산이 인준을 받은 상황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 제13장 시행부칙

60조 본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회칙에 의거하지 않는 사항은 상층 단위 회칙, 통상 관례 및 민주적 제반 양식에 준한다.

61조(시행세칙) 본 회칙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행세칙은 운영위원 3/4 출석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할 수 있다.)

62조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 14일 이후로 효력을 발생한다.